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호		
건명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18. 8. 2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심 경 석		

I .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은 서초4동주민센터를 재건축하여, 서초4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초4동복합주민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가칭)	주소	면적	층수	개원 (예정)	정원 (예정)	시설확보
서초구립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	서초동 1302-6 (서초4동)	542㎡	지상1층	2019.3월	68명	서초4동 복합주민 센터 내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위탁기간 : 5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

○ 위탁업무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

○ 위탁체 선정 :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8조(위탁기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검토 의견

1. 동의안 제출 개요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22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274개소로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서초4동 보육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한 서초4동복합센터 지상1층 542㎡ 규모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2.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함.
 -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 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등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II. 참고자료

1. 관계법규
2. 위치도
3.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현황
4.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별 소요예산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 1. 변경 사유서
 -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3.]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

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시설의 재건축 등의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3.05.02.)

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1.11.1.)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3.05.0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1. 인적·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사고 현황
6. 성과평가 자료 등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어린이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재활용센터 등 환경위생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영어센터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문화·체육 및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공영주차장 등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및 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첨부2 서초4동복합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 위치 현황도

지도



현장사진



국공립어린이집 상위 5개구

- 1위 성북구(80개), 2위 성동구(76개), 3위 강서구(74개),

공동 4위 서초구 및 관악구(71개) * 참고: 15위 강남구(54개), 6위 송파구(68개)

금회 대상 6개 어린이집 확충시 : 71개→77개로 2위(예상)

(2018.8월 현재)

국공립 개소 순위	자치구	계	국공립(비율)	국공립 비율 순위	사회 복지 법인	별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합계		6,050	1,436(23.7%)	-	28	107	1,773	2,421	30	255
1	성북구	281	80(28.5%)	10	2	17	76	98	2	6
2	성동구	189	76(40.2%)	2	0	3	37	66	0	7
3	강서구	439	74(16.9%)	23	2	2	142	207	1	11
4	관악구	270	71(26.3%)	11	1	6	85	101	1	5
	서초구	204	71(34.8%)	3	0	1	42	69	2	19
6	마포구	211	68(32.2%)	6	0	6	46	75	4	12
	구로구	332	68(20.5%)	18	3	8	90	148	6	9
	송파구	411	68(16.5%)	24	1	5	139	181	2	15
9	동대문 구	225	67(29.8%)	8	0	3	59	87	0	9
	양천구	319	67(21.0%)	17	0	2	76	166	1	7
11	노원구	458	65(14.2%)	25	4	0	66	315	1	7
12	영등포 구	258	62(24.0%)	14	2	1	67	95	0	31
	강동구	273	62(22.7%)	16	1	2	99	104	0	5
14	동작구	225	58(25.8%)	12	3	2	69	85	1	7
15	은평구	280	54(19.3%)	21	1	7	143	72	1	2
	강남구	224	54(24.1%)	13	0	0	70	72	1	27
17	서대문 구	154	52(33.8%)	4	0	3	46	47	1	5
18	강북구	167	50(29.9%)	7	1	3	67	43	1	2
	도봉구	248	50(20.2%)	19	1	2	76	116	1	2
	금천구	168	50(29.8%)	8	1	10	49	50	1	7
21	중랑구	243	44(18.1%)	22	1	4	95	97	0	2
22	광진구	201	40(19.9%)	20	0	1	94	61	2	3
23	종로구	78	33(42.3%)	1	2	3	9	4	0	27
24	용산구	124	29(23.4%)	15	2	9	24	49	1	10
25	중구	68	23(33.8%)	4	0	7	7	13	0	18

첨부4

시설별 소요예산

(단위:천원)

연 번	어린이집명 (가칭)	총사업비	구 分				
			리모델링비	신축비	기자재비	시설 개선비	매입비
1	신반포아크로 어린이집	260,000	60,000		120,000	80,000	
2	신반포자이 어린이집	260,000	60,000		120,000	80,000	
3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어린이집	300,000	60,000		140,000	100,000	
4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	260,000	60,000		120,000	80,000	
5	서초4동복합주민 센터 어린이집	1,586,000		1,486,000	100,000		
6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	1,600,000	60,000				1,500,000

* 재원구성 : 국시비(85%) 구비(15%)